제873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(상환)전환우선주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(신설) ㅇ 콜옵션 부여 (상환)전환우선주 관련 공시의무 강화 –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콜옵션 부여 (상환)전환우선주의 경우,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및 상장법인이 자기 (상환)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공시의무 부과 ㅇ 콜옵션 부여 (상환)전환우선주 관련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–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(상환)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(상환)전환우선주 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 ㅇ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 (안 5-24조의2) –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한 (상환)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가액의 결정, 하향 및 상향 등에 대해 전환사채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 ▶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-4, 제5-24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어촌계 명칭 사용 제한(신설) ㅇ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가 아니면 어촌계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▶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5조의5 2.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등(신설) ㅇ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, 법령에 따른 처분 및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촌계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▶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5조의12	1.비중요 2.비중요
3	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건설업 등록 시 시설 및 장비 기준 강화(강화) ㅇ 건설업 등록기준상 장비에 대해 자기소유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,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성능검사 등을 받은 적합한 장비이어야 함을 규정 ▶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2.건설업체 행정체재처분 부과기준 강화(강화) ㅇ 처분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판단토록 하고, 불법하도급 등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원칙으로 함 ▶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	1.비중요 2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제정안 (환경부)	1.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(신설) ㅇ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, 인증시험, 사후관리 등 규정 - (구성) 본칙 9조 및 부칙 2조, 별표4개 및 별지4개로 구성 - (본칙)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인증의 신청 및 검토), 제4조(인증시험 방법), 제5조(시험기관 등), 제6조(인증서의 발급), 제7조(사후관리), 제8조(인증심사위원회 구성 · 운영 등), 제9조(재검토 기한) 규정 - (부칙) 제1조(시행일), 제2조(시험성적서 등에 대한 특례) ▶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전체 조문	1.비중요